

「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」 일부 개정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부터 제52조, 국토교통부 「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」, 「군포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「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변경(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적용)
-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기타 인용 조항 정비

2026. 2. 20.

군 포 시 장

붙임 :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1부